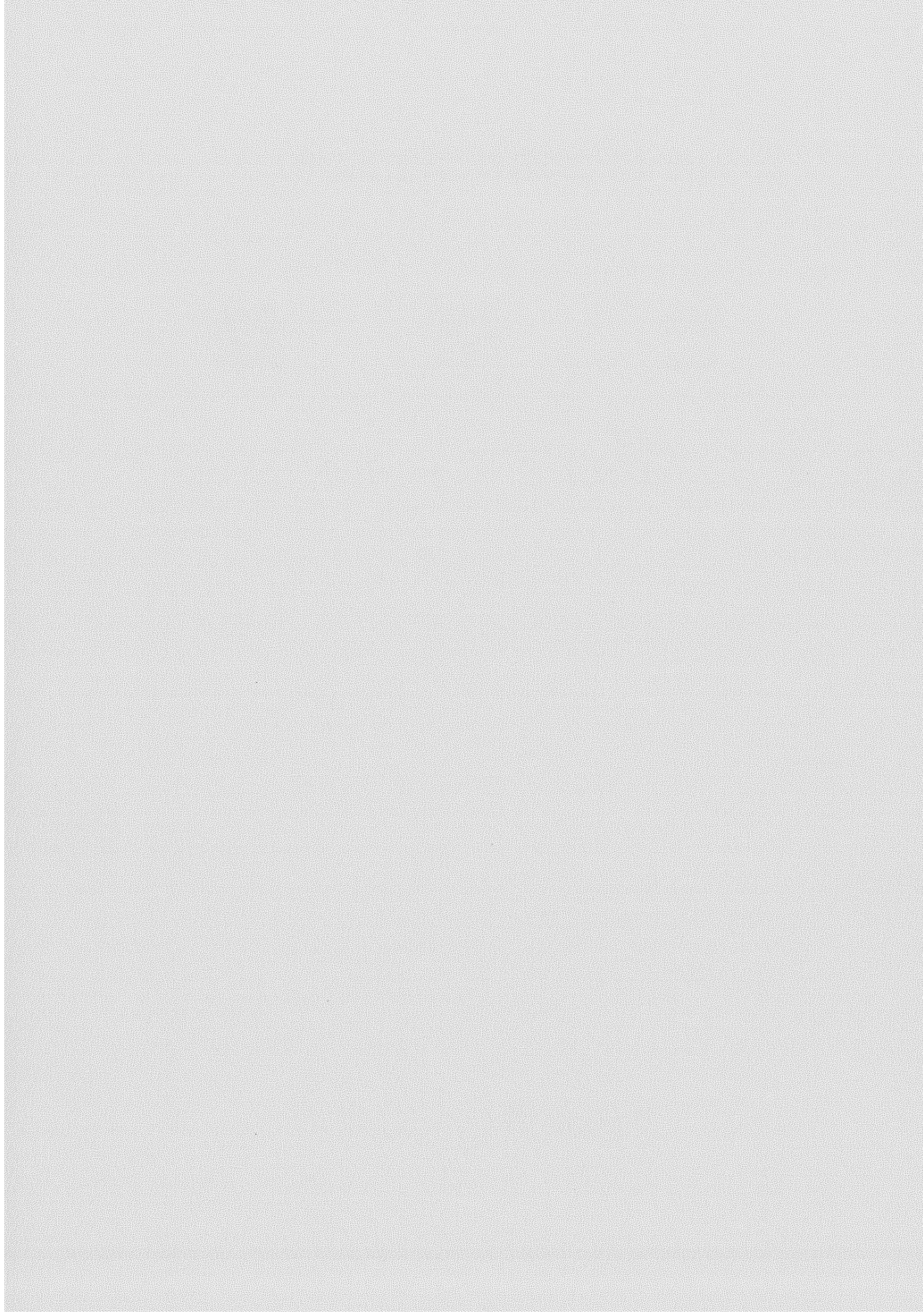


第102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99.6.7 ~ 6.9.)

忠清北道教育委員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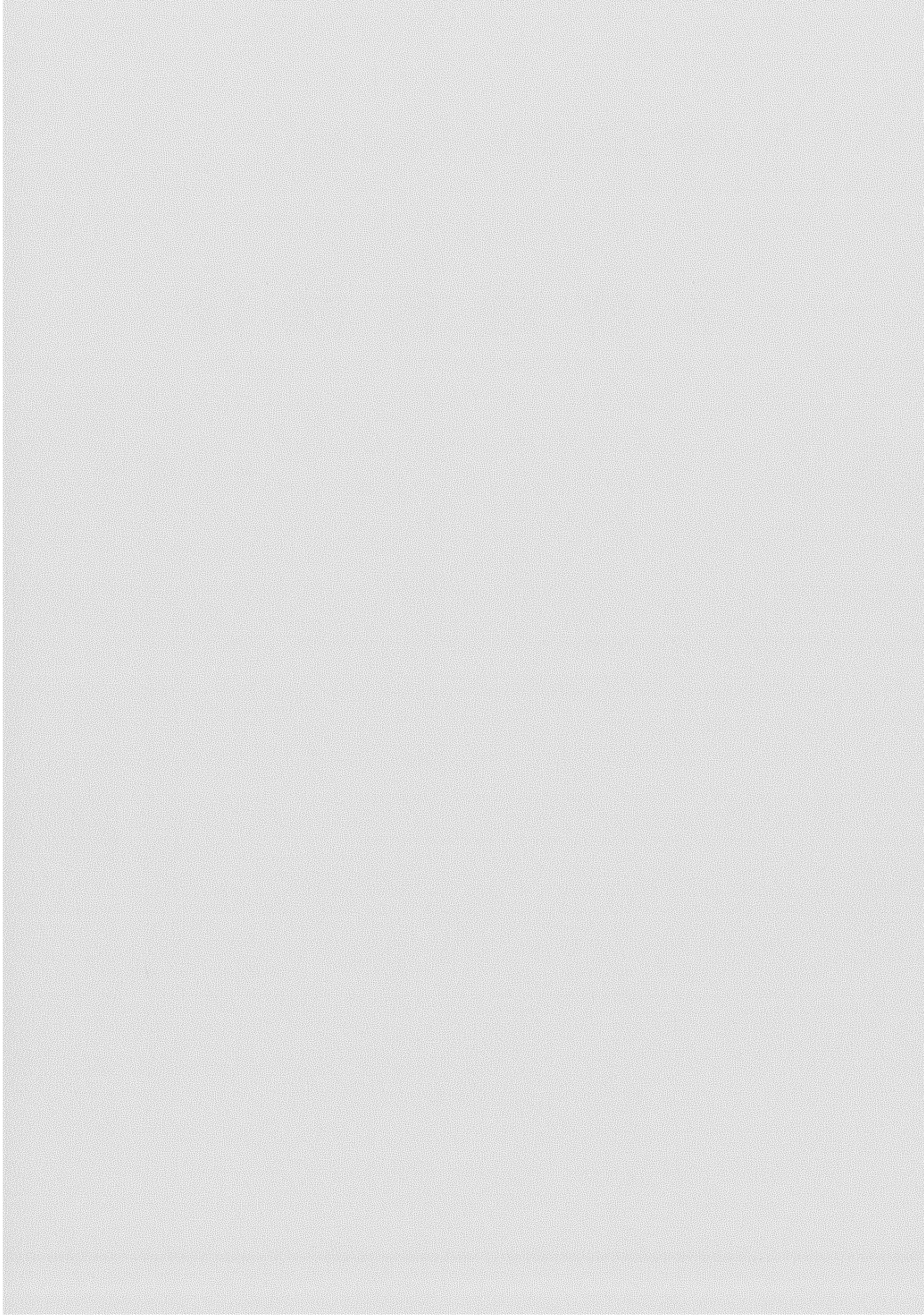


第102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99.6.7 ~ 6.9.)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1999. 6. 통권 제64호

I. 개회식	3
II. 제10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5
III. 제10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1
IV. 제10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1
V. 부 록	
1. 의사일정	51
2. 교육기관 방문의 건	53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9년 6월 7일 (월요일) 14시 00분

開會式順(第102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신용건)

(14시 00분 개식)

(14시 02분 폐식)

● 의사담당 신용건

지금부터 제10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9년 6월 7일 (월요일) 14시 02분

議事日程 (제1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0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교육기관 방문의 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홍재문)
2. 제10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충원위원 외 2인 위원 발의)
4. 교육기관 방문의 건(이충원위원 외 2인 위원 발의)

(14시 02분 개의)

● 의장 조일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달에는 회의가 없었던 관계로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회의장에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는 제주도에서 개최한 전국 소

년체전을 참관하시고 선수를 격려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훌륭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애쓰신 집행관 여러분들께도 수고가 많으셨음을 감사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홍재문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눔)

의사과장 홍재문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99년 5월 31일 손만재위원님 외 2인 위원님이 공동으로 임시회의 출석을 요구하여 같은 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고 제99-5호로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일자로 이충원위원님 외 2인 위원님으로부터 교육행정질문을 위한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교육기관 방문의 건이 공동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화기 의결안건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101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신 바 있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99년 4월 28일자로 공포되었으며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을 '99년 4월 27일자로 집행청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동 임시회에서 의결하신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그리고 제100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셨던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99년 5월 21일 제1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99년 6월 4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이충원위원님 외 2인 위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

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교육기관 방문의 건을 의결하신 후 대상 교육기관 두곳을 방문하시고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2. 제10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05분)

● 의장 조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께 통보드린 바와 같이 10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6월 9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서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안에 금지대상 시설이 들어서는 등 문제가 발생한 교육기관 두곳을 방문하는 한편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요구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제10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의사일정안 : 별첨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교육기관 방문의 건

(14시 07분)

●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교육기관 방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
습니다.

발의위원을 대표해서 이충원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충원위원 발언대로 나옴)

● 이충원 위원

이충원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
과 교육기관 방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들은 본인 외 두분의 위원님이 공동
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
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지방자치
법 제37조제2항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
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
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이

며 출석요구 일시는 제102회 임시회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 때인 6월 8일 오후 2시와
6월 9일 오후 3시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충청북도교육감과 충
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부교육감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각 국장, 그리고 담당관, 과장급 간부
공무원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위한 것
입니다.

다음은 교육기관 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문대상 기관은 미원공업고등학교와 신
흥고등학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바
와 같이 이상의 두 학교들은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금지대상 시설인 폐기물 매
립장과 호텔이 들어서는 문제로 인하여 학
부모와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각 언
론에 연속 보도되는 등 교육환경이 악화될
지경에 처하였으므로 이에 우리 교육위원들
이 해당 기관과 관련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만나 현재까지의 상황과 앞으로
의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문제해결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방문일은 오늘 오후와 내일 오전이 되겠
으며 출발시간, 방문시간 등 자세한 일정은
별도 협의된 바대로 하고자 합니다.

(제102회-본회의 제1차)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교육기관 방문의 건을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 조 교육기관 방문의 건 : 별첨2
(끝에 실음)

(이충원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이충원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은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행정질문요지서와 함께 즉시 집행청으로 통보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 및 모fp 제3차 본회의에서 있을 교육행정질문과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3항 교육기관 방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기관 방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금회 회의록 서명위원은 송

진하, 이기수 두분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회의가 끝나면 즉시 교육기관 방문일정에 따라 미원공고와 인근에 조성중인 청원군 쓰레기매립장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청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전에는 두 번째 방문기관인 신홍고등학교를 방문한 후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질문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질문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질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조일환, 부의장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종원.

0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곽창신,

교육국장 최성태,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공보감사담당관 김진성,

초등교육과장 김천호,

중등교육과장 이주원,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교육정보화과장 윤주택,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고일영,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 의사일정(안) : 별첨1
- ▶ 교육기관 방문의 건 : 별첨2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9년 6월 8일 (화요일) 14시 00분

議事日程 (제1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附議된 案件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중원위원 외 2인 발의)

(14시 00분 개의)

● 의장대리 이기수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장님 사정상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어제 오후와 오늘 오전에 미원공고와 신흥고 두곳의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학교측과 해당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청원군 부군수와 군청 관계 공무원 등을 만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학교보건법상 심의대상 시설이 들어서는 데 대한 현황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한 바 있는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라 집행청 관계관들이 출석한 가운데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한 출석요구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교육감과 집행청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모두 출석하여야 하나 교육감과 교육정보화과장님이 옥천 교육감과의 대화 행사와 충주교육청 장학지도 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사유를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 규칙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

왔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늘 이 자리에서 듣지않고 집행청에서 보다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행정예 관한 질문의 건

(14시 03분)

● 의장대리 이기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질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질문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질문을 하실 위원님은 손만재, 이충원 이상 두분 위원님으로 질문순서는 의석순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대에서 하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서의 내용 이외의 발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절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자이신 손만재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만재위원 발언대로 나옴)

● 손만재 위원

교육위원 손만재입니다.

현재 각급학교 및 도교육청 산하 각 기관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정품으로 교체 사용에 따라 제 문제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교육청 산하 학교 및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및 교육용 컴퓨터의 전체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두 번째, 이 컴퓨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정품의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세 번째,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소요예산 총액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글97은 사 이트라이센스가 10개 33만원으로 실제로는 적게 구입해도 되나 회사에서 10개를 구입하면 열가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량을 10개로 구입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업안 작성이나 수업에 큰 도움을 주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개에 240만원,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효과가 있다는 V3 프로 98을 50개 등등 교비 373만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학교의 규모, 기관 규모에 따라 오히려 예산이 증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학교 자체로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 학교 경영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사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상 정보에 의하면 5월 한달동안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된 자가 무려 1,679명으로 그중 100여명이

구속된 것으로 경찰청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서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중 적발되어 지적된 곳은 없는지, 또한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도교육청에서 기 파악한 자료를 이용하여 주시고 산하기관 각급 학교에 공문 또는 전통을 통한 일체의 조사는 하지말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만재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대리 이기수

손만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원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발언대로 나옴)

● 이충원 위원

이충원위원입니다.

지금 길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생략하는 부분도 몇 있을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1999년도 각급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부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역위원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적법절차 없이 학교 책임자의 일방적 내정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가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가 정식으로 이의가 제

기되어 관할청에 보고된 경우가 있으신지 뭐 없으시면 없는 것으로 있으시면 있는 것으로 그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육청산하 행정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 개최시 주도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본래의 목적수행에 어려운 경우가 적지않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육청산하 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 인원수, 이것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학교, 근무처, 실제로 되어 있는 주소지, 인원수는 얼마나 되나 있으신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꿔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학구제가 있었을 때 그 학구내에까지 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교육행정 공무원들로 하여금 가급적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권유가 있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 진의는 어디에 있는지 아마 이것은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된 점이 무엇이며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라고 본청에서 보시는지 앞으로의 개선책을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운영위원회 명단 요구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위원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의 명의를 합니다.

4월 15일 의사81433-1호로 1999학년도 충청북도 각급 학교운영위원장 명단을 요구한 바 있으며 그 목적은 교육위원으로서 충실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자료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 학교운영위원장과의 현장 교육문제에 대한 면담, 위원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학교운영에 대한 각종 정보, 활동사항 및 자료송부, 교육현안 문제에 대한 질문지 발송 등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개별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거 비공개 대상이나 정보공개제도 운영 요령에 의하여 주소와 전화번호를 제외한 단순 명단만을 보내시 양지하시기 바람”이라고 회신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교육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또다시 1999년 6월 3일부터 행정질문을 위하여 질문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명단 및 전화번호와 주소가 기재된 것을 의장명의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역시 목적은 위원활동, 특히, 운영위원회 면담, 전화연락, 위원활동 사항보고, 운영위원의 문제점 파악, 학교운영위원회 개선

방향에 대한 자문, 교육위원회 활동사항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함을 명시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교육감의 회신으로 “충북교육위원회의 규칙 제54조의 규칙에 의거 서면질문의 내용이 아닌 자료제출 요구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에 이 제1항에 규정에 안전의 심의와 직접 관련되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게 되어 있사오니 서면질문에 대한 서류제출은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이라고 회신하여 왔습니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질문을 하고 관계법령에 대해서 조금 제가 여쭙보겠습니다.

과연 법률 제7조1항6호에 해당하는 학교운영위원이 그 대상인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 지금 교원 명단을 전부 인쇄를 해서 내보내고 하는데 학교운영위원들의 명단은 유독 그것은 비공개 대상인지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학교운영위원장 중에는 명함에 위원장임을 명시하고 이력서에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개적인 비공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론은 저의 짧은 식견으로써는 대단히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교육위원들을 선출한 위원들과의 접촉은 위원으로서의 의무요 권리라고 생각하며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겹해서 제가요 저는 뭐 모르는 것인데 비공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읽어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제7조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에 보면은 비공개대상 정보 해서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아니할 수 있는데 그 6호를 했는데 보십시오.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이것은 개인의 신상파악하는 데에 문제가 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과연 주소와 전화번호가 개인 정보 파는데 비공개로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이 조항으로만 봐가지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명함과 이력서까지 새겨가지고 다니는데 개인의 신상을 알려고 하면 주민등록번호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정보를 아는데 관련이 되기 때문에 비공개로 해야지만 과연 주소와 전화번호가 이에 해당하는가, 둘째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상술의 법률 해당자이기 때문에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미 다른 시·도의 경우 교육위원들이 충실한 위원활동을 돕기 위하여 공적으로 위원들에게

학교운영위원회 명단, 주소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것을 배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 셋째, 이렇게 엄하게 지켜야 할 법률이며 공포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 도교육청의 산하기관이 지역교육청에서 이미 공적으로 공개된 경우가 있다고 하면 공개한 기관의 책임자와 당사자에 대한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문서가 아닌 학교 팩스로 본청 몇몇 인사에게 위원장 명단을, 그리고 위원장 주소가 적혀있는,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그 서면을 보낸 사실이 있다고 하는 풍문이 있는데 조사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 조사하여 사실이라고 하면 법에 의하여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조금 또 묻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998년부터 '99년도에 사립학교 시설공사 현황에 대한 질의인데 이것은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후에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추후 해 주시는데 다른 것은 다 괜찮습니다.

요 전에 내 주신 데 대해서 이것만 좀 내 주셨으면 합니다.

수의계약 한 것만, 뭐 공적으로 한 거야, 제가 알고 수의계약 한 것이 혹시 없으시면

없는 것으로, 있으시면 있는 것으로 수의계약한 것을 학교명, 건명, 발주일시, 수의계약자 및 회사명, 발주 금액, 이것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뭐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두건 있으니까, 역시 아까 손만재위원 얘기대로 학교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다 빼시고 그 수의계약한 것만 좀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경예산 삭감에 관한 질의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액수를, 삭감을 저희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당부분의 예산이 교육적 목적보다는 교육 외적 목적을 위하여 편성된 듯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히, 시중에서는 1차 심의과정인 교육위원회에 대하여 곱지않은 말들을 하고 있음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들이 예산심의시 참고를 하기 위해서도 도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점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따라서도 교사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의 심의 당시 우리 교육위원들에게 배포하여 주실 수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넷째 질문에, 삭감된 예산으로 인하여 어떤 문제가 야기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

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교감 자격연수로 인한 수업결손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 전에 사전에 질의를 제가 뵈니까, 내용을 좀 보고해 달라고 그런 것을 해서 대체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초·중등 학교별로 어느정도 수업결손이 생기는 시기는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생기는가, 기간제 교사로 채용할 경우 소요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약 2억정도 든다라고 하는 게 서면질문으로, 수업결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서면질문 답변을 다른 것은 다 받았는데 이 두가지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경우 소요경비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중등별로 어느정도 수업결손이 생기는지, 수업결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것도 조금 말씀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왜 그런고 하면은 아직 예비비가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나중에 모자라면 이런 것을 해서 보충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잠재적인 저의 내적 의견을 가지고 묻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모회,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와의 대화 등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질문을 위한 자료의

필요에 의해서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의 요지는 1999년부터 1999년 5월 30일 현재까지의 교육감님이 직접 참여한 상기 모임의 각각의 일시, 모임 유형, 모임 지역, 모임 주체, 모임에 참여한 인원, 그리고 각종 모임시 소요경비와 지출항목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의 답변으로서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본인이 받았습니다.

“위 질문의 내용은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다하기 위한 교육감의 일상업무에 속하는 문제이며 또한,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도 작성되어 있지 않아 제출하기 어려우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하는 취지와 서면답변에 대하여 또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의 취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감님의 최근의 지역별, 또는 학교별 각종 모임에 대한 직접 참여에 대하여도 도합 각종 신문에 논란의 기사가 나왔고 이에 대한 해명도 겸하여 기사화 된 것을 보았습니다만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집회의 참여시마다 논란은 그치지 않고 기사화 되어 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서면답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항 속의 집회 참여목적에 대하여는 교육감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가 작성되어

있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즉, 심지어는 각종 신문에 지역인사 동향으로 행사참여 소식이 빠짐없이 났는 데도 불구하고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다는 것은 제가 대단히 그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재차 자료를 요구하는데 주실 수 없는지요? 두 번째입니다.

역시 요구한 자료중 모임별 소요경비를 공개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역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다음에 아홉번째인데 신흥고등학교 부근 건축은.....

의장님 종합 토의하실 때 그것은 말씀하실 것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이기수

예. 토의가 있을 것입니다.

● 이충원 위원

신흥고등학교 부근 건축된다는 호텔에 관한 질의입니다, 건축물.

호텔의 규모와 교육적 영향, 비교육적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제가.....

오전에 이미 다른 위원님이 갖다 오셨습니다.

저는 2,3일 전에 이미 그 학교를 가서 보고 왔습니다.

교육감님의 대처와 교육적 견해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은, 역시 뭐 세워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말씀이시겠지만은 좀 듣고싶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그 질문서에 나와있지 않는데 질문서에 나와있지 않은 이유중의 하나가 이것은 조금 취급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은데 기왕 나왔으니 말씀을 좀 해야겠네요. 그 저에게 질문 회답하기는 54조 의회규칙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면질문 내용은 질문이 아닌 서류이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질문이 없도록 하여 달라는 강력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아마 저희가 연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서류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료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자료 속에 서류는 들어갈 수 있으며, 서류 속에 자료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조항을 봤기 때문에 저는 서류가 아닌 서류는 영어로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Official(공무원, 관리)한 것일 겁니다.

공공적인 것. 반드시 거기는 개입합니다 한문으로 보면은, 자료는 그 보다는 광역적인 의미로 해석되거나 때로는 서류를 제외할 수 있다고 본인은 봅니다.

따라서 제가 요구는 서류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리

고 54조에 대한 것은 아마 조금은 서로가 연구하는 의미에서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게 되면은 명단 보내 달라고 한 것에 보면 교육감님께서 교육부에 질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질의의 답변이 아마 오면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질문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선의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을 돕기 위한 질문이나,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명단 공개를 하지 않기 위한 질문이나 하는 어느 방향인가 하는 것은 그 방향에 따라서 해답이 달리 올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하신 그 사본을 제가 내일 이쥬, 내일까지 그것을 복사를 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청합니다 저는, 그렇게 아시고 이상의 질문을 제가 그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대리 이기수

이충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두분 위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기적절하고 깊이있는 질문을 해 주신 두분 위원님께서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후 3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에 있었던 행정질문에 대한 집행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

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의장 조일환, 부의장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 출석공무원 : 12명

부교육감 곽창신,

교육국장 최성태,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공보감사담당관 김진성,

초등교육과장 김천호,

중등교육과장 이주원,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고일영,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시설과장 으형근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9년 6월 9일 (수요일) 15시 00분

議事日程 (제1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附議된 案件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중원위원 외 2인 발의)

(15시 00분 개의)

● 의장 조일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는 제가 사정이 있어서 부의장님께 회의진행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집행청과 여러 위원님께 사과말씀 올립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행정질문에 대한 집행청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만 교육감님과 평생교육체육과장이 소년체전 선수단 해단식과 기타 행사참석 관계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사유를 회의

규칙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였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있을 집행청의 답변은 어제 제2차 본회의시 출석하여 행정질문을 직접 들으신 바 있으면서도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서 교육감을 대신하여 출석·답변할 수 있는 부교육감과 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교육행정에관한 질문의 건

(15시 02분)

● 의장 조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손만재, 이충원 두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눔)

● 부교육감 곽창신

부교육감 곽창신입니다.

존경하는 조일환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21세기 선진 충북교육 건설에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새학교 문화의 창조없이는 대망의 21세기를 충북교육의 시대로 만들 수 없다는 인식하에 금년을 교육개혁 결실의 해로 정하고 세계화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질문과 조언을 적극 수렴하여 본도 교육을 발전적 변화와 개혁을 이루고 새로운 천년을 열어가는 활기찬 충북교육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중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본인이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충원위원님이 질문하신 여섯 번째 질문사항인 자모회,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와의 대화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서는 자모회 또는 학부모회 모임에는 참석한 사실이 없습니다.

교사와의 대화는 '96년도부터 방학중을 이용하여서 연 1내지 2회 초·중·고별, 지역별, 공·사립별 교사대표를 추천받아 교육청에 본청에 초청 건의사항 등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왔습니다.

질문의 초점이 되는 지역교육청 방문 교육감과의 대화는 역대 교육감들이 연두 순시 등으로 지역교육청을 방문해 왔던 연례행사의 일환이며 교육감 취임후 과거의 업무보고의 성격과는 달리 열린교육행정 구현의 차원에서 교육현장의 애로점과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현장의 대화 형태로 전환 4년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지역의 학교장 및 학부모, 지역인사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 대표, 지역교육청 직원 등을 대상으로 도교육청의 역점 추진방향과 지역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소개하고 각급 학교 및 지역의 교육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대화의 장입니다.

지역교육청 방문시 교육감과의 대화 소요 경비는 참석자의 중식비 1인당 8천원정도로

총예산 991만 2천원을 11개 교육청에 배부하여 집행하였으며 모임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본인의 답변을 마치고 다른 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지금 지역에서 교육감님이 활동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눔)

● 교육국장 최성태

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항상 충북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일환 의장님과 교육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손만재위원님, 이충원위원님 순으로 답변하고자 합니다.

먼저 손만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프트웨어 정품 교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교육청 산하 컴퓨터 보유 현황은 교육용 2만 1,503대이며, 업무용은 7,133대 총 2만 8,63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컴퓨터에 필요한 정품 소프트웨어 교체 소요량은 아래 한글, 엑셀 등 4종류에 3만

7,340여 개로 추정됩니다.

셋째, 이 정품 소프트웨어 교체에 필요한 소요액은 약 26억원에 달하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일거에 해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으로는 산하 기관에서 필요한 정품 소프트웨어를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제2회 추경에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학교 교육활동 및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교육부에서도 초·중·고등학교 학교 현장에 대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단속을 일정기간 유예시켜 주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복사품 사용에 따른 지적현황 및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7일 단재교육원에 대한 단속반의 점검결과 검색대상 621개중 168개의 소프트웨어를 지적받은 바 있으나 당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일부 소프트웨어 22개는 조달청에 이미 구입요청 중에 있었으며 현재는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46개의 소프트웨어는 어학실용 컴퓨터에 설치된 것으로 컴퓨터 관련 연수가 실시되고 있는 관계로 부득이 삭제하지 못하고 사용한 것이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정품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충원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인 교감 자격연수로 인한 예상되는 수업결손과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결손을 예방하기 위한 기간제 교사는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임용토록 하고 있으나 금년같이 다수 인원의 동시 연수로 인한 수업결손이 예상되어 이의 사전 예방을 위해 연수대비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초등교감 연수대상자는 106명으로 자체 교과전담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56개 학교의 56명은 교과전담교사로 수업을 담당하게 하고 교과전담교사가 미 배치되었거나 또는 교과전담교사가 이미 학급을 맡고 있는 학교의 50여명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여 수업결손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중등교감 연수대상자는 103명으로 서면으로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연수대상자가 이미 1개월 전부터 자기 과목을 타 교과와 시간교체를 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일 교 2명 이상 지명 또는 기타 사유로 교체 수업이 어려운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여 수업결손을 예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경우 예상되는 소요예산은 초등이 만약 50명으로 천다면은 4,800여 만원, 중등이 19명 예상이 된다면은 1,824만원정도가 소요 예상되나 초·중등 공히 기 편성된 기간제 교원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충원위원님의 마지막 질문인 신흥고등학교 부근에 건축된다는 호텔에 대하여 그 규모와 교육적 영향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의 규모는 지하2층, 지상 15층으로 건립될 계획이며 부대시설로서는 쇼핑센터와 공연장 및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위 시설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 가능한 시설로서 지난 5월 13일 청주교육청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특급호텔이 사회, 문화 등에 미치는 복합적 순기능을 고려해 볼 때 여관, 여인숙 등 일반 숙박업에 비하여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등·하교시 교통안전상의 문제가 예상되는 바, 이는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한 대책을 세우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교육국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이충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각급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에 관하여 지역위원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 적법절차 없이 학교 책임자의 일방적 내정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가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의 제기되어 관할청에 보고된 경우가 있는지와 교육청 산하 공무원의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 인원수 및 교육행정 공무원들의 참여 권유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진의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된 점과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위원의 경우 운영위원의 적법한 절차없이 학교 책임자의 일방적 내정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가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정식으로 이의 제기되어 관할청에 보고된 경우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누구나 추천할 수 있고 지역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역위원으로서 활동 의사를 반드시 확인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학년도 지역위원 재보선 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되어 우리 교육청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청 산하 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한 인원수는 얼마나 되며 교육행정 공무원들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권유가 있었는지와 그 진의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운영위원의 직업별 분포에 따르

면 이미 보내드린 명단에 나타난 바대로 각 계각층의 공무원이 학부모위원에 56명, 지역위원에 88명이며, 이중 교육청 산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교육행정 공무원들의 운영위원회 참여 권유는 '96년도 교육부 지침에 의하여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시에는 국가 정책에 대해 폭넓은 지식과 책임감을 가진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많이 참여하여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권장하여 주시기 바람” 등의 공문과 우리 교육청의 '96년 5월 16일자 교장 회의자료로 참여를 권장하였고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58 조제2항제3호에 지역위원의 자격을 교육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포함한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하고 있고, 오히려 이들의 자발적 참여로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되고 심의의 질이 향상되는 등의 효과가 있으며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상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점과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라고 생각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문제점이다 하고 표면으로 나타난 것은 없으나 학교운영위원들의 전문성과 참여 열기를 불어넣기 위한 학교 운영위원 연수와 홍보를 기회 있을 때마다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 명단 요구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인지와 다른 시·도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였는데 이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이미 학교운영위원 명단 공개한 책임자에 대한 조치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 명단이 비공개 대상인지에 대한 답변으로 다른 시·도에서 주소와 전화가 기재된 학교운영위원 명단을 배포한 것에 대한 의견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의 서면질문을 접수한 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규와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의 질의·회신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한 결과 정보주체보호와 향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위원님 입장을 존중하고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뜻으로 전화번호와 주소를 제외한 5,237명의 명단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교육위원들의 위원활동을 돕기위하여 주소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단을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다른 시·도의 학교운영위원 명단 공개 여부를 알아보았는데 시·도별 명단 공개상황은 그 지역의 정서와 분

위기에 따라 상이하여 고심하던 중 위원님께서 주소와 전화번호가 포함된 명단을 재차 요구하셨기에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립하고자 지난 6월 2일 유권해석을 요하는 질의를 교육부에 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개여부는 교육부의 회신에 따를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교육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에도 학교운영위원 전체가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권을 갖도록 하고 선거인 명부인 학교운영위원 명부도 선거인인 학교운영위원만이 선거 기간중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위원 명단을 일부 지역교육청에서 이미 공개했다면 그 기관의 책임자와 당사자에 대한 조치여부와 사적 팩스로 본청 몇몇 인사에게 위원장 명단을 보낸 사실이 있다는 풍문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조사·조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전체 학교운영위원 명단을 공개한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이 어느 곳인지 밝혀주시면 그 경위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으나 집행청 내부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료를 받은 것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팩스로 보낸 것은 교육부에 위원장 명단 제출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보냈던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교육부장관께 질의한 공문서 사본은 교육부에 질의한 회신이 오는 대로 함께 보내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8년과 1999년도의 사립학교 시설공사의 공사현황 중 수의계약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에서 답변하였듯이 사립학교의 시설비는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해당 학교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시설사업의 발주는 해당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 교육청에 없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는 추후에 조사하여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삭감에 관하여 도의회에서 삭감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예산심의 시 논란이 되었던 점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속기록을 배포하여 주실 수 없는지, 그리고 삭감된 예산으로 인하여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도의회 예산심의 시 논란되었던 점 및 속기록 배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서 삭감할 때에 구체적인 삭감이유를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유를 설명할 수 없으며 삭감과 관련한 논의에 대하여는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이 교육위원회

의사국에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예산으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내역은 교육위원회에서 본청 청사보수비 13억 7,482만원,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외부지원금유치 우수교 지원비 외 7건 18억 7,946만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비하중 토지매입비 외 2건 25억 300만원을 삭감하여 총 57억 5,728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예산요구액의 일부만을 삭감한 사업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에서 사업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할 계획이며, 전액 삭감된 사업은 이를 폐지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기를 다음 연도로 늦추어 전체적인 교육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의2에 있어 서류와 자료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99년 6월 3일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회신한 내용중 "충북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이충원위원님이 제출하신 서면질문의 내용은 질문이 아닌 서류 제출 요구로써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되고 본회의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되어 있사오니 서면질문에

의한 서류제출 요구는 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를 바라며”라는 내용에 있어서 위원님께서는 서류와 자료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여 서류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료로 요구한 것이라고 하였던 바 자료라 하여 서면 질문에 의거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법규 해설 책자에 의하면 서류와 자료는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관계법규 해설 책자 사본을 제시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질문에 대한 집행청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진행순서와 방법을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손만재위원님의 질문 건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고 나서, 이어서 이충원위원님의 질문 건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서 동일 질문의 건에 대한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저에게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서 1회 10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동 회의규칙 19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위원님들은 앉아계신 의석에서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보충질문을 하시거나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실 경우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난 후에 발언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다른 분의 발언 도중에 발언권도 얻지 않고 말씀하시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것이니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청 관계관 모두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손만재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만재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예. 손위원장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 손만재 위원

교육위원 손만재입니다.

어제 제가 질의말씀 드린 것에 대한 보충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정품교체, 이것을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해서 기간을 조금 연장시키는 쪽으로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연기가 돼서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됐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그럼 현재 각급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정

품으로 교체하지 않은 학교의 컴퓨터 사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써도 좋다고 하는 이런 지시라도 해 주셨는지, 관계 기관과 협조중이니까 그대로 정품이 아니라도 써도 좋다, 뭐 이런 것을 여기서 지시를 하셨다면은 교육에 지장이 없겠는데 그런 것을 혹 삭제해서 쓰지 말라고 지시를 하셨는지, 그것을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질의 말씀은 지금 4종류의 소프트웨어 정품으로 교체하는 데도 26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교육청 산하 교육공무원 중에는 이 컴퓨터에 대한 기능이 아주 뛰어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활용해서 방학중이라도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해 가지고 이것을 학교에 보급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지,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텐데, 그런 길이 있나 없나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일환

예. 다른위원님, 이 손만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분이 계십니까?

● 김광수 위원

일문일답식이 아닙니까?

● 의장 조일환

아, 그렇게 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위원님의 답변을 단위로 진행을 하겠

습니다.

더 계십니까?

● 이상일 위원

글쎄요.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면 안됩니까?

● 의장 조일환

지금 일단 그렇게 한번 저기를 했으니까 또 일괄해서 답변을 들으시고 또 하셔도 좋습니다.

기회는 또 드리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면 의장님 제가 조금.....

● 의장 조일환

예. 이상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이상일 위원

지금 손만재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거기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가 교육용, 업무용 합쳐서 약 2만 8,686대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 소프트웨어 정품의 수량만도 약 3만 7,340개, 소요예산이 26억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기관대 기관으로 단속하는 것을 유예요청은 한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 한국, 지적 소유권 보호 차원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몇 십억 돈이 아까워서 우리가 남이 개발해 놓은 제품을 불법 복제품이나 사다 써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내년도에 소요예산이 26억으로 다 되는 것인지 하는 정확한 예산을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액수가 과연 내년도에 다 확보가 될 수 있는지 하는 것하고, 이게 사실 벌금이 천만원 이상 5천만원까지 아마 물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육계가 고발을 당했다고 하면 참 부끄러운 일인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어떻게 세우는 것인지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일환

이상일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손만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예. 김광수위원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광수 위원

저는 기간제 교사에 관해서 그 교감·교장 연수에 따른 그 수업결손에 따른 그 문제에 관해서 좀 아까 손만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교육청 당국에서는 그 교감·교장 연수로 하여금 공백이 되는 그 자리를 기간제 교사나 또는 전담교사로 하여금 공백을 채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 의장 조일환

김위원님, 말씀 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질의는 이충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아닌가요?

● 김광수 위원

그런가요?

● 의장 조일환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김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기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수 위원

미안합니다.

● 의장 조일환

죄송합니다.

(이기수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예. 이기수위원님께서.....

● 이기수 위원

어제 질의했던 손만재위원님의 질의가 시적절한 질의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국장님께 답변도 들었고 그런데 이것을 한때 메스컴에서도 지적해서 얘기가 된 적도 있고 합니다만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노력을 해 가지고 금년부터 최대한 노력을 한다, 이런 막연한 말씀보다는 전체 예산,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몇 년까지 예산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다 해결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실제적인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있으시면 그 구체적인 계획,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든지 또는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에 지장이 없게끔 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조일환

그러면 이기수위원님 말씀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모두 침묵)

그러면 손만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은 손만재위원님께서 정품구입관계를 지금 당국과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는 시기가 상당히 늦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한 교육현장에 지장이 우려되는 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업이란 한번 지나면 그만인데, 그리고 두 번째가 삭제를 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또 세 번째는 26억 예산이 이것이 절약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안다, 우리 교육청에 얼마든지 노하우가 있는데 이것을 장사꾼들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인력을 해서 할 수 있다고, 또 동아리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대체방법, 소위 노하우를 활용을 해서 자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은 없겠는가, 마지막으로 해 주신 것이 우리가 어떤 단속에 대해서 유예를 해 준다고 기다렸다가 어느날 만약에 이것에 대한 손상이나 단속에 유관됐을 때에 이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러한 중요한 네가지를 엿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일위원님께서 26억까지 이것 충분히 가능하나, 그리고 이 예산이 내년에 편성을 해서 그 예산의 규모를 내년에 편성할 수 있는가, 이기수위원님께서 수업에 위해서는 자체개발을 좀더 촉구하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청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교육국장 최성태

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손만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약 관계부처와 단속유예가 되었다면은 사용해도 좋으나, 아니면 삭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지시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원칙적으로 저희들은 정품 이외에는 삭제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정통부 공문을 이첩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지금 정품을 한꺼번에 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해서 지금 교육부와 정통부간에 1차적으로 시·도 단위 1차 기관만 먼저 금년에 확인을 하고 일선 현장 학교는 금년에 안하는 것으로, 유예하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또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26억원이나 되는 이것을 일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부터 금년 2차 추경부터 시작해서 신년도 예산에 이것을 적절히 반영을 해서 교체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학교에도 그

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꼭 바꿔야 할, 정품으로 교체해야 할 품목이 무엇 무엇인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를 저희들이 지난번 한 열흘 전에 이미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미 받았 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교원들도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교원들의 이 노하우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제공하면 안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사실상 저작권이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학습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하더라도 이것은 관계가 없는데 상품화 되어 있는 기존의 업체가 만들어 놓은 상품화 되어 있는 이 소프트웨어를 무단복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재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주고 새로운 정품을 사 들인다는 것인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더 좋은 소프트웨어는 계속 만들어서 학교에 제공해서 활용할 예정입 니다.

그 다음에 이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26억원이라는 돈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총 4종에 3만 4천 몇 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기관당이 아니라 컴퓨터 한대당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대당 1.3정도가 나와요, 이것은 통계를 내 봤더니 실제로는 그 컴퓨터의 활

용도에 따라서 2개 내지 3개로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우선 지금 우리가 정품으로 1차적으로 교체해 줘야 할 예산이 26억정도 든다는 것이지 앞으로 그 컴퓨터의 활용도에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업고등학교 같은 학교에 있는 교육용 컴퓨터라 하더라도 실업고등학교는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비가, 구입비가 좀 더 많을 것이고, 그냥 단순히 워드나 하는 정도, 워드 하는 정도 같으면 한 4,5만원 되겠죠. 또 이 금액을 산출하는 데는 즉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 가격과 이것을, 가격이 소프트웨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추정 금액이라는 것은 그것을 총 돈을 총 개수로 나누어 보니까 약 7만원정도, 개당 이렇게 나와서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이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의 구체적인 확보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여기 아마 앞에서 제가 말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마다 이것은, 금년에 조사한 것은 3만 4천 얼마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이 연도별로 또는 분기별로 조사해서 계속해서 보급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26억의 예산확보는 아직 그 예산이 26억정도가 되는데 예산계에 금년도 추경에 얼마쯤 세워달라, 다음 신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이것이 다 되겠느냐, 사실 우리가 1차적으로 낸 것은 26억이 나왔습니다마는 아직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

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내년도 26억을 확보한다든가, 금년도 그 반을 확보한다든가 말씀은 올리 지 못하고 어쨌든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또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위원님 여러분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래 듣기에도 뭔가 오해하신 것처럼, 이 교원의 노하우라는 지적은 복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연구원, 기타 기관에 저희 충청북도에 교육공무원들이 어느정도의 수준인가를 위원님들이 알아 보셨습니다.

CD를 금년에 34개를 제작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약 1,000개를 제작을 연구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제가 아닙니다, 복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는 1,000만원정도 주고 살 것이라도 우리 교사들의 노하우라면 100만원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눔)

● 교육국장 최성태

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이 뜻이 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기업에서 만들은 정품을 우리가 복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수많은 그 소프트웨어는 저희들 교육청이나 저희들 식구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복제를 하더라도 복제가 되지 않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제해서 학교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 올린 것은 우리가 정품사용, 정품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저작권을 가지지 않는, 우리 선생님들이 저작권을 가지지 아니한 기업체의 아래 혼글을 여태까지는 복제해서 그냥 썼습니다, 매체를 그냥 썼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앞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돈, 그것에 대한 정품구입, 이런 문제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 말씀씨가 모자라서 의장님께 바르게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위원님들, 손만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 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기수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이기수위원님.

● 이기수 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전국 16개 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현황을 대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각 교육청별로 전국에 있는 그 교육청별로 우리 충북교육청이 소프트웨어 개발한 것하고, 경기도에서 개발한 것하고 서로 이제 사고팔고 하지 말고 서로 복제해서 쓸 수 있게끔 이런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눔)

● 교육국장 최성태

지금 이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개 시·도가 각자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이것을 서로 공유하는 문제, 이것은 지금까지는 사실상 기업이 돈벌기 위해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가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무단 복제되어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공유문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타시·도에 서로 주고받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이 만들든 특별히 돈하고 관련되지 않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16개 시·도가 상호 PR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서로 상호 교환되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지금 통계는 아마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숫자 통계는 있을 것입니다만은 제가 지금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일환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모두 침묵)

손만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가장 적절하고 시기적으로 일선에서 전전공공하고 막대한 수업에 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젝션 TV같은 것도 막대한 예산을 주고 했는데 실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더 조직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서 이러한 정보화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손만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를 마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충원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원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예.

● 이충원 위원

의장님께 조금 여쭙겠습니다.

전 일괄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문일답을 원하는데 가능하십니까?

● 의장 조일환

지금 저도 여러 가지로 일문일답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은 시간관계상 또 이것을 한분 하시고 답변듣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또 진행상 제 미숙으로 어려울 것이다 해서 제가 일괄 답변형식을 좀 취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반드시 내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시겠다면 하시도록 허락하겠습니다.

● 이충원 위원

고맙습니다. 시간을 길게 끌지 않

고.....

● 의장 조일환

예.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 이충원 위원

제가 간단한 답만 제가 의사를 여쭙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모회 등에는 참석한 일이 없다, 아마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문구를 그렇게 보낸 것 같은데 1998년 및 '99년 5월 30일 현재까지 자모회,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집회 및 교사와의 대화 등에 관한 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모회에 교육감님이 참여하실 수 없죠. 분명히 그것은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말이죠 학교운영위원회, 지역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회 및 지역새교육공동체의 시민모임 등 이런 데 참여한 통계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으신대로, 있으면 있으신 대로 제가 그것을 책임을 추궁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 의장 조일환

예. 저기 통계가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은.....

답변이 가능합니까?

● 부교육감 곽창신

(앉은 자리에서)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충원 위원

제가 책임추궁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신문에 나가든요 교육감님 동향에 보면은. 그런데 여기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한번 여쭙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산을 내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장선생님들, 또 위원들의 여비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뭐 1인당 음식은 8천원인데 뭐 어떻다는 것은 아니죠. 지역별 모임에 그 경비를 좀 산출하는 방법이 있으면 산출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 제가 강제로 이것을 산출해 내라, 안내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제대로 제가 질의한 것을 파악을 못하신 것인지, 또 추후라도 가능하신 것인지?

● 부교육감 곽창신

(앉은 자리에서)

지금 교육감님과 대화에.....

● 의장 조일환

저, 죄송합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충원 위원

제가 질의를 할 때 뭐냐면 사용경비는 교육 본청, 지역교육청, 협의회 자체 경비 등으로 구분 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한.....

뭐 그럴 수도 있죠 본청에서, 그것은 뭐.....

● 의장 조일환

저 잠깐만 제가 이충원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도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을 왜 취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답변이 간단한 것도 또 혼동도 가고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정회를 해서 우리 어떤 시간을 드려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해서.....

● 이충원 위원

뭐 답변이 곤란하면 추후 서류로 제출한 다든지 모른다면.....

● 의장 조일환

아니 그러니까 이위원님께서 꼭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일괄질의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정회를 하고.....

● 이충원 위원

아까 보니까 즉 말씀을 하시는데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먼저 것은 다 잃어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또.....

● 의장 조일환

아니 이위원님, 그러니까 일문일답 형식으로 계속 하겠습니까?

● 이충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의장 조일환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청에서는 지금 통계가 어렵고 즉시에 답변이 어려운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신다든가 또 추후에 직접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다고 분명하게 즉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거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앞은 자리에서)

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일환

잠깐 나오세요.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지금 이충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문일답식의 답변에서는 우선 저희들이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부교육감님도 갑자기 기억도 못하시고, 또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관리국장 저도 못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숫자상으로는.

그래서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 부감님이 답변 못하시면 저라도, 또는 제가 못하면 과장님이라도,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못하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이충원 위원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 의장 조일환

그것은 이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저한테 부탁을 하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그렇게 진행을 할까요?

(모두 침묵)

예. 그러면 국장님이 아니면은 우리 과장님이라도 가능하나, 안하나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진행하겠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럼 계속 질문할까요?

● 의장 조일환

예

● 이충원 위원

저의 질의 중에 운영위원장 명부입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을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전에 말씀을 드리기에 교육감님의 생각으로 정말로 운영위원들의 명단이 비공개 대상인가? 제가 이렇게 여쭙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좀 확실히 못 들어서 그래서 좀 여쭙보는 것입니다.

그 법조항 말씀하시지 마시고 국장님, 그냥 이렇게 우리의 견해로서는 이렇다는 것을 해 주시면은.....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눔)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아까도 간략하게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명단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도 알아보았고 또 저희들 교육청 나름대로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또는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의 질의·회신 내용, 또 저희들이 집행청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 등에 관련해서 종합

적으로 아주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동 자료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그중 일부를 위원님께 제출하신 그 내용은 교육위원님의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그 뜻에서 저희들이 전화번호와 주소를 제외한 명단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이충원 위원

왜 이 시점에서 선거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6개월이 남았다고 그러고.....

분명히 교육감님도 좌담회를 통해서 선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선거가 아직 6개월이나 남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집행청에서는 이것을 선거하고 관계를 짓는지, 아직 선거법도 개정이 안돼 있고 한데.....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라는 그 용어 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을 할 때에 앞으로 예견되는 예상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청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히 논의를 하다보니까 선거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선거에 의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입법예고했던 그 내용에 의하면은 선거권자가 학교운영위원 전체가 될 수 있다

는 내용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이충원 위원

그러면은 교육위원들이 일상 활동으로써 방문을 하거나, 전화연락을 하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자료를 송부하는 것은 지금 청에서는 교육위원회 일상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볼 수 없나요?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그것은 일상 활동으로다 저 개인으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러면 그것을 돕는 방법은 교육청에서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드리는 것인데 그 중에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 차원에서 관련법이라든지, 질의·회신,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이충원 위원

공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는 요 제7조의 비공개 대상 해 놓고요 6항에 저한테 공문을 주신 것입니다.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부 등에 의하여, “등”이라는 것은 위에서 2개를 “등”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여기에 삽입되어 있지 않은 기타 여건의 “등”으로

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명기되어 있지 않은, 명기되어 있지 않은 “등”은 규정이나 명령이나 기타에 명기되어 있어야 이게 “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한 기관장이나 한 위원이 자기 마음대로 “등”을 이거이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정말 신상파악하는 데에.....

그러면 요전에 질의말씀 드린 대로 교사의 명부도 지금 다 주소가 나가고, 전화번호도 나가고 그러는데 유독, 이미 벌써 선생님들 주소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전부 교육청에서 걸어가지고 특히실 걱정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죠.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눔)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등”은 위원님께서 두가지 다른 말씀 하신 것으로 저도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저희들이 해석하는 그 저기가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 이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운영위원이지요, 명함 새길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비밀공개에서요. 그리고 또 이 분들은 지금 선거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전부 명함을 새길 수 없다, 주소 넣을 수 없다, 전화번호 넣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위원님께 하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 이충원 위원

예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이 법 해석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미 질문을 재차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 집행청에서는 정말로 고심하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속시원하게 참 그 필요한 자료가 안됐다 라는 그런 뜻에서 어떻게 하면 충족을 시켜야 되겠느냐 라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교육부장관한테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법과 관련한 해석 문제는 위원님과 기획관리국장인 저 이렇게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저 나름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에 의한 지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만큼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장관의 회신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이충원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 왜 이 말씀을 자주 여쭙는고 하면 교육부에 여기서 질의한 공문을 회답이 온 뒤에 질의한 위원에게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인 어떤 해석을 하기 위해.....

저도 연구를 해야죠. 지금 국장님도 연구가 잘 안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쭙보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기를, 하신 그것을, 공문을 어제 요구했으니까 오늘 주셔야 하지 않느냐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 이상 답은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저는.....

● 의장 조일환

이위원님?

● 이충원 위원

예

● 의장 조일환

제가 조금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도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교육위원회 의장이 두차례에 걸쳐서 제출한 서면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서면질문의 회의규정에 보면은 서면질문이 자료냐, 아니냐, 이것은 어렵습니다.

거의가 질문은 자료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이 위원회 활동에 필요해서 요구하는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좀 더 신속하게 이렇게 좀 대처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반드시 이것을 요구하는 자료를 어디에 문의를 했다, 해 봐서 주겠다 하면 반드시 기한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한을 명시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청에서는 되도록 빨리 위원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부에 질의도 하셨다니까 그게 질의가 한달 후에 온다고 그것도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면 교육부에 연락을 하시고 해서 언제까지 확실한 기한을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면은 교육부에 질의가 올라갔다고 하니까 우리 교육청의 기한과 그것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미루는 것이 어떤가.....

● 이충원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뭐 국장님께 자꾸 책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시는데 몇가지를 자료를 주기 어렵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것은 기록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가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했을 때에 도서관에 가

봐라, 사전에 있으니 봐라 하는 식의 대답입니다 그것은.

의회의 회의록이 어디어디 보관되어 있는지 가 봐라, 그 얘기는 제가 듣기가 좀 그러네요. 그것은 제가 기록을 안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답은 위원으로서 제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대답은 조금 저기 하네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록하지 말고 들어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도 약간은 지금 저기 했기 때문에 자꾸 질문이 헛갈리는데요, 조금 다른 분이 하시고 좀 시간을 좀 주시죠. 나도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2차 주실 겁니까?

● 의장 조일환

예. 지금 2회에 한해서 할 수가 있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이충원위원님이 대충 제가 계측을 해 보니까 15분 이상을 소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1회에 10분 이내입니다만은 위원님의 인격을 존중을 해서 제가 제재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위원님 또 계시면은 두 번째 가서 보충질의를 하시면 안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회에 한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 이충원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조일환

그러면 이충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본

청에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것이 있습니까?

(송진하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예, 송진하위원님.

● 송진하 위원

송진하교육위원입니다.

교감자격연수로 해서 보충수업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초등은 56명은 교과전담교사로 보충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을 하고, 중등은 기간제 교사로 해서 예산이 1,824만원이 소요된다 그거죠.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때에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마 시급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교과전담교사가 하는 일을 교과전담교사가 학급을 담임하게 되면 그 학교 전체교사가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부담을.

그리고 그 교과에 대한 계통적인 수업에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소모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모두 기간제 교사로 할 수는 없는가, 얼마나 예산이 드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의장 조일환

예. 지금 송진하위원님 자기 연수 방학을 활용하든가, 교과전담보다는 기간제가 더 바람직한데 가능하나,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에“하고 발언대로 나옴)

● 교육국장 최성태

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지금 송진하위원님께서 학교를 참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우리 200여명 되는 연수 수 강생을 대체할 인력을 전부 기간제 교사로 쓰면 어떠하겠느냐,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또 그렇게 되더라도 학교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간제 교사는 작년에 저희들 문제가 IMF(국제금융기구) 때문에 가능하면 자체에 인력이 돌아가면은 자체 해결을 하고 뭐 억제하는 그러한 것으로 왔습니다만은 금년에 오면서 전체적인 그 교원 TO(Table of Organization:[인원의] 기구표)가 줄고 하면서 선생님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해서 그 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러한 여론도 있고 해서 3월 이후 4월경에 와서 기간제 교사는 증원과 마찬가지로 학교장이 학교 실정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임용하고 상급 관청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106명중에 56, 50, 그리고 중등에 103명중에서 19정도, 이렇게 한 것은 어느정도인가 하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이고, 학교는 물론, 교과전담교사는 교과전담교사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분을 학급 담임으로 돌리는 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른 것은 학교장이 판단을 해서 기간제를 꼭 써야 될 때에는 기간제 쓰고, 우리 학교는 이제 7월이고 7월은 중등학교같으면 기말고사도 있고, 뭐 이래저래 해서 기간제 쓰는 것 보다는 지금 있는

선생님이 서로 바뀌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든가, 이래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송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오히려 저희들이 이것은 전부 기간제로 바뀌라, 이렇게 되면 자격연수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일 반연수도 있고, 지금 7월 달에 접어들면서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교육장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기보다는 학교장이 적의 8판단해서 학교장의 교육적인 소신 위에 진행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오늘 보고드린 것은 예상치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 송진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조일환

송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시죠.

이기수위원님?

(“없습니다” 하고 말함)

김광수위원님?

●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아까 순서가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62세로 정년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교감·교장 연수가 아마 상당히 우리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그

것에 따라서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요지를 순간재위원님이 물어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겹쳐서 말하면서, 이번에 명퇴자가 8월 말까지 상당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등은 그런대로 중등은 별로 걱정이 안되는데 초등의 결원사태가 기간제로 해서 다 충당을 하는 것인지, 또 기간제 교사를 쓴다면 기간이 얼마가 되는 것인지, 또 별로 수업결손이 없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직 명퇴희망자가 확정은 안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별 지장이 없이 우리 충북교육이 원활하게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개략적인 답변이라도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조일환

지금 김광수위원님께서 명퇴문제, 정년문제로 학교 공동화 현상이 지금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한 수급대책, 크게 보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있으시면은.....

뭐 안되시면 다음에 주셔도 좋습니다.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눔)

● 교육국장 최성태

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그 숫자를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가 없고 개략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 합해서 이제 그 명퇴 인원은 대개 934명인데 이것이 지금 초등교원의 경우

명퇴 포기를 지금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며칠에 하나씩 이렇게 해서 10명 이내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바뀔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년퇴임은 100 몇 명 돼서 전체가 1,1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초등이 그 중에서 아마 5, 600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담교사 230명 이번에 중등자격소지자에서 뽑은 사람, 또 지금 가지고 있는 대기인원 160여명, 이것 다하고 나면은 기간제로 써야 할 인원이 한 2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여명은 지금 저희들이 아마 며칠 전에 얼마 전까지 지역청으로부터 기간제 교사로 근무를 희망하는 선생님 수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기간제를 쓴다면 아마 전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것은 기간제를 전체 모자라는 인원을 기간제 교사를 전체 써야 되는 것이 학생의 교실에 선생님이 투입되지 못하는 사태는, 이것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다 모자라는 인원은 전체 기간제 교사로 할 것이며, 또 그 기간은 방학중에는 기간제 교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학 이외의 기간은 전부, 학생이 있는데 선생님이, 아무리 2월 달이라고 하더라도, 흔히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9,10,11,12월까지는 그대로 쓰고 1월 달은 방학이기 때문에 수업이 없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를 사용할 수가 없고 2월 달이 설

혹 반쪽짜리라 하더라도 좀 앞당기고 뒤땡기고 해서 30일 근무를, 애들은 안가르친다 하더라도 학습자료를 준비한다던가, 수업준비를 한다던가 해서 근무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 보름 토막이라 해서 몇 학급은 선생님이 없어도 좋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방학을 제외한 전기간, 결원이 생긴 전학급을 위해서 기간제 교사를 써야 되는 것으로, 또 그렇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우리 이충원위원님 뒤 꼭 시간이 이위원님이 쓰실 시간이 10분이니까, 답변시간은 빼고 여유있게 드립니다. 충분히 여유 있으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 이충원 위원

아까 그 제가 조금 당황했기 때문에 못여쭈 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냐하면 이미 학교운영위원회 명단이 나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교육부의 부정적인 대답이 오고 이게 반드시 비공개 대상이라고 하면은 그 도출시킨 책임을 묻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가 있는가 이랬는데, 있습니다.

있으니까, 명백히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최후의 경우에는 제출합니다.

기록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타시·군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 얘기를 하는데 선거가 임박한 지역에도 제가, 임박이라고 하는 게 언제까지가 임박이냐 하면 법적으로는 모릅니다.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지금 그 선거 얘기가 여기서 나올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청에서 근거와 관련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대로 도에서 타도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이 아까 운영위원회 소관이 지금 학교운영과시조, 운영과, 학교운영과시조?

(자리에서 기획관리국장 “예” 하고 말할)

그런데 운영과 이외에 이미 팩스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공적으로 보시느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운영과에 팩스로 보내왔다고 하면 제가 얘기를 안하죠. 운영과 이외의 직원에게 지역청에서 그것을 팩스로 보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 보내줬다라고 하면 그것은 교육청에 누구든지 받아도 그것은 비공개 대상이라 상관없다. 그렇게 보시는 것인지, 그것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분에게 팩스를 보냈습니다.

그것도 만일 나중에 이것이 불법이라고

그랬을 때는 제가 이것은 제출을 합니다.

● 의장 조일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다음에 할까요, 지금 바로 하시겠어요?

(자리에서 기획관리국장 “예” 하고 발언대로 나옴)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중에 이미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밝혀주실 수 있으면, 해당 기관이 어디인지 밝혀주실 수 있다면은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회신 오는 내용과 관련하여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이충원 위원

맞습니다. 거꾸로 저에게도 미리 요구를 하기를 원하시는 국장님!

공문을 지금 보낸 사본을 저에게도 미리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리, 나는 줄 수 없고, 너는 달라고 하는 식으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으로 되면은 그때 가지고서 제가.....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위원님께서 꼭 필요하시다면은 저희도 드릴 수도 있습니다.

● 이충원 위원

좀 주십시오.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저희들 질의한 사본을 꼭 필요하다면은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명단 공개를 한 기관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회신 오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 이충원 위원

비공개 대상이라고 명료히 되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그 다음에 타시·군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아까 빨리 지나 가다 보니까 그렇게 들으신 모양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 보았습니다.

알아보았더니 시·도별 명단공개는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숫자상으로 보면 시·도별로 9개 시·도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집행청에다가.

그랬는데 그중에 2개 시·도만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 이충원 위원

거기에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와 비슷한 여건의, 관리국장님이 자꾸 선거 선거 하시는데 비슷한 지역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팩스관계는 저희 교육청이 어디 담당과가 아닌 데서 받으면 이것이 공적인 것이냐,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들이 넓게 보면은 교육감 소속 산하에 있는 직원들은 형편에 따라서 뭐 다른 과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런 이론이라고 하면 교육위원 우리도 교육청과의 전혀 다른 기관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주시고, 제가 더 이상 추궁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아시고.....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저 위원님, 질문에 하나하나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자니까 감정이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 지는데 그러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그 조금 가미될 수 있는 소지는 좀 위원님께서 가능하시면 다른 기회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든지, 여기서도 아까 선거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위원님께서, 왜 여기서 선거가 여기서 나오느냐는 말씀을 하시면서 타시·도 예를 들으셨는데 이렇게 예측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것은 똑같이 감정이 이상한 쪽으로 가면 이상한 쪽으로 흐를 것 같아서 혹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문제는 우리 위원회하고 집행청의 문제가 아니라고 좀 넓게 좀 봐 주신다면은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이충원 위원

제가 그것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고, 국장님 입장으로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에 조금 제가 자꾸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희망사항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기간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저기인 것 같은데요, 국장님?

그 저 이번에 교감연수에서 가능한이면 우리 교육위원회 추경이 있잖아요, 희망사항입니다.

추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돈이. 그런 것으로 보면 기간제를 좀 쓰셔서 선생님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셔야 교육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교원들의, 선생님들의 불평도 불편스럽거든요, 시간 더 하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제가 희망사항이고요, 예 끝났습니다.

● 의장 조일환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김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관리국장 소관입니다.”하고 말함)

관리국장님 소관, 국장님.

● 김광수 위원

아까 이충원위원님께서 본 질문을 드렸고 또 보충질문을 조금 하시다가 말씀한 것 같은데, 제1차 추경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 말고 13억 7,300만원 말고, 또 교사위원회에서 18억 7,100만원, 또 예결위원회에서 25억 3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아까 기획관리국장님 답변에 도의회의 예결위원이라든가에서 삭감한 부분은 자료가 충분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교사위원회의 그 회의록은 우리 교육위원회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자리에서 관리국장 “예”하고 말함)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육위원회 하고 집행청은 우리 다 같은 한 배를 타고 같은 운명체에 있기 때문에 더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그 예산은 집행청에서 꼭 이런 예산만은 이번의 추경으로 해서 교육예산으로서의 활용을 해야지만이 교육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추경을 해 올렸고, 또 저희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도의회에 가서 교사위원회에 가면은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18억 7,100만원이나 삭감이 됐고, 또 예결위에서도 거기다 더 25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삭감이 돼서 저희들 참 교육위원의 입장으로도 그렇고, 또 아마 집행청에서도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산이, 가장 교육에 뒤따르고 뒷받침이 되는 예산이 이렇게 돼서야 이게 되겠는가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하도 자조감에서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그 예산이
도의회에 갔을 적에는 어떻게든지 이것이
전액이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게 이렇게 많이나 43억 7천만원이나 도의
회에 가서 삭감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면 교육위원회가 예산심의
체대로 안하고 이것을 의결해서 그냥 보낸
결과가 되고, 또 이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예산 보낸 게 아니겠
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결과는 그렇게 되
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참 이제까지
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예산삭감이 되지는
않았었는데 이번만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
의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사유를
안물을 수가 이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25억이나 삭감이
된 것을 원인과 이유를 잘 모르고 있다니
그것은 더군다나 한심한 얘기가 아닌가 싶
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조일환

그거 지금 설명이 되겠습니까, 지금 되겠
어요?

(자리에서 기획관리국장 “예”하고 발언
대로 나눔)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제1회 추
가경정예산 삭감 내역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이충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답변의 질의 내용이 예산심의시 논란되었던
점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요구하고
또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서 집행청하고의
논란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저희들이 사용하
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은 논의된 구체적인 내
용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삭감된 내역은 전
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나오는데 이 하나하나를
삭감할 때에 왜 깎느냐, 이것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이렇기 때
문에 깎는다고 의회에서 명시를 하지 않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설명만 즉 해 왔
지, 그것이 의회에서, 당신들이 이렇게 필
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유로 깎는다,
이런 삭감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삭감하는 그 과정을 잠깐 설명
드리면은 예결위원회 같은 데서는, 또는 교
육사회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집행청을 참여시키지 않고 그 위
원님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의를 해
가지고 와서 몇시에 와라 그래서 가 보면은
거기서 통과를 시키는 이런 절차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된 이유를 사실 설명할 수
가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또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
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 김광수 위원

의장님, 이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일환

아, 그렇습니까?

● 김광수 위원

예, 도의회에서 예산심의과정, 삭감과정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면 이것이 이번 회기에 들어와서 더 그러한 것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청 당국에서도 기이 예산을 올린 것이라면 이것이 사실상 100% 그대로 통과가 되어야지, 교육 우리가 활동에 지장이 없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방법을 지금 증전에 그렇게 그냥 이런 거 예산서 내놓고 한번 설명할 정도로 그칠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면은 그 예산, 본 예산이 다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더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앞으로 기 교육위원회를 통과해서 제출된 예산은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일환

저희가 참 충북교육을 위해서 진지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광수위원님이나 이충원위원님이 질문하신 예산삭감의 내역을 알아도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대강의 이유도 있고 그곳에서 심의하실 때 다 참석을 하셨어요, 저희는 또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 추경을 할 때에 반드시 이것이 참고가 됩니다.

이런 것은 뭐 어떤 형식에 떠나더라도 그야말로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것이 이렇게 변동이 됐다더라, 이런 쪽으로라도 간략하게 요점을 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면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좀 부탁을 올립니다.

그러면 답변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행정질문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단지, 이 자리에서 의장이 여러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밝혀질 일을 몇가지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원공고와 신흥고등학교를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미원공고를 방문한 바 위원님들이 상당히, 현장에 가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질의

를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크게 두가지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우선 공사의 규모나, 기간이나, 또는 중요성에 비추어 봐서 학교에서 150여미터에서 벌어지는 공사를 우리 교육계에서 감지를 못했다. 이것이 1년, 2년 후의 4월 달에 가서 이것이 적발이 되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것은 우선 저희 집행청에서 우리 자체단속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현지에 부임한 교장선생님은 3월 달에 부임하고 뜻밖의 불이익을 당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 청원군청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한 혐오시설을 설치하면서 다른 것은 협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자고 이것을 협의를 안하고 임의로 정화구역 내에 이러한 쓰레기 폐기장, 다 싫다는 것입니다.

동네에서도 아주 먼 데, 오지에 가서 하는 것을, 청원군청에 이런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고 집행청에서는 요청을 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고등학교 문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사전에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시고, 사전 검토를 하시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기 심의가 다 마쳐지고 법적으로 규정상 하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학교장의 의견, 학부모의 의견, 또 우리 교육자의 입장에서 교육의 환경을 고려할 때 이것이 기이 규정대로 시설이 들어서더라도 예의 주시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학교,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의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되도록 특별히 유념하셔서 감독에 충실해 달라고 위원님들께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회의규칙 저희들 제54조에 보면 서면질문의 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위원은 서면질문 할 수 있고 이것이 답변이 안될 때는 반드시 기한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셔서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지금 답변이 안된 것은 언제 주시겠다고 바로 서면으로 주셔서 우리 충북 교육에 한발짝의 발전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안의 폐기물 매립장과 호텔이 들어서는 미원공고와 신흥고를 방문하여 학교측, 교육청, 유관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자세한 현황 설명을 듣고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또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집행청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1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공포·시행된 5분 자유발언제가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라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위원님들의 발언신청이 없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실 것

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청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3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서, 제10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폐회)

○ 출석위원 : 7명

의장 조일환, 부의장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 출석공무원 : 12명

부교육감 곽창신,

교육국장 최성태,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공보감사담당관 김진성,

초등교육과장 김천호,

중등교육과장 이주원,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교육정보화과장 윤주택,

총무과장 고일영,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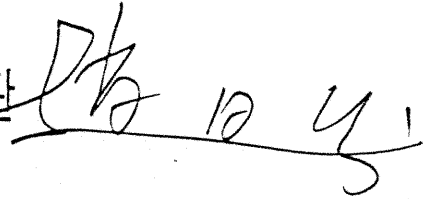
시설과장 오형균

제10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1999. 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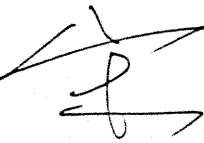
의 장

조 일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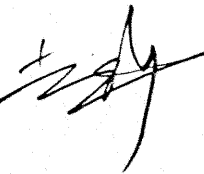
위 원

송 진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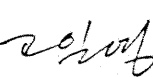
위 원

이 기 수



의사국장

고 일 영



(별첨1)

議 事 日 程

第102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1999. 6. 7. ~6. 9. (3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99. 6. 7.(월) 13:30 14:00	<input type="checkbox"/> 교육위원 협의회 : 교육위원실 <input type="checkbox"/> 개회식 [제1차 본회의 개의] 1. 제10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기 : 1999. 6.7. ~6.9. (3일간) 2.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안설명) 3. 교육기관 방문의 건(제안설명) [제1차 본회의 산회] <input type="checkbox"/> 교육기관 방문 : 미원공고	
6. 8.(화) 14:00	<input type="checkbox"/> 교육기관 방문 : 신흥고 [제2차 본회의 개의]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제2차 본회의 산회]	
6. 9.(수) 15:00	[제3차 본회의 개의]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집행정지 답변) [제3차 본회의 산회] ※ 폐 회	

(별첨 2)

의안번호	제 102 - / 호
의 결 연 월 일	1999. 6. 7. (제 호)

교육기관 방문의 건

발 의 자	이 충 원 교육위원 외 2인
발의년월일	1999. 5. 31.

교육기관 방문의 건

의안 번호	제102- / 호
----------	-----------

발의년월일 : 1999 년 5 월 31 일
발 의 자 : 이충원 교육위원 외 2인

1. 주 문

제 102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사회) 회기 중 다음과 같이 교육기관을 방문한다.

가. 방문기간 : 1999. 6. 7.~6. 8. (2일간)

나. 대상기관

- 미원공업고등학교 : 청원군 미원면 내산리 218-2 소재
- 신흥고등학교 : 청주시 상당구 울량동 516 소재

다. 방문일정

- '99. 6. 7.(월) 15:00 미원공업고등학교
- 6. 8.(화) 10:00 신흥고등학교

2. 이 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조성에 따른 현황 파악